

제2582호
2018. 06. 07.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신 선 애
 전화: 3396-4952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 제2018-68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2
 제2018-69호 : 남대문구역 제7-2,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3

● 공 고

- 제2018-427호 :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신청 공고 5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
 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2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68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1-17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8길 35	2018.06.05.	필동로8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필동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남대문구역 제7-2,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6.29.)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425호(1978.12.29.)로 도시환경정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326호(1982.8.14.) 및 제472호(1984.8.9.)로 지구분할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55호(2012.6.14.)호로 7-2,9-2지구 통합결정고시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4-56호(2014.7.9.)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4-91호(2014.11.3.), 제2016-113호(2016.11.30.)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중구고시 제2017-2호(2017.1.4.) 관리처분인가된 남대문구역 제7-2,9-2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8조에 제2항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82)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 나. 명 칭 : 남대문구역 제7-2,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
 - 나. 면 적 : 4,453.4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순 일
 - 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품림빌딩 15,16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4개월
5.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7.1.4.
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총 계 (㎡)		4,502.00	4,453.40	(감)48.60
대지면적 (㎡)	관광숙박	1,825.51	1,777.74	(감)47.77
	업무	834.40	853.47	(증)19.07
	판매	1,079.49	1,065.19	(감)14.30
	소계	3,739.40	3,696.40	(감)43.00
정비기반 시설면적 (㎡)	도로	762.60	757.00	(감)5.60
	소계	762.60	757.00	(감)5.60

나. 건축계획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대지면적(㎡)	3,739.40	3,696.40	(감)43.00
건축면적(㎡)	1,986.22	2,011.60	(증)25.38
건 폐 율(%)	53.12	54.42	(증)1.30
연 면 적(㎡)	60,481.52	60,521.99	(증)40.47
용 적 륜(%)	999.97	1,014.24	(증)14.27
층 수	지하8층,지상28층 2개동	지하8층,지상28층 2개동	-
용 도	숙박,업무,판매시설	숙박,업무,판매시설	-

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세부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처분면적 (㎡)	환지시설	60,481.52	13,618.76	(감)46,826.76
	체비시설	-	46,903.23	(증)46,903.23
	계	60,481.52	60,521.99	(증)40.47
종후감정 평가(원)	환지시설	430,709,135,525	89,712,831,604	(감)340,996,303,921
	체비시설	-	391,750,847,396	(증)391,750,847,396
	계	430,709,135,525	481,463,679,000	(증)50,754,543,475

라.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면적 (㎡)	도로	762.60	757.00	(감)5.60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도로)	547.10	549.50	(증)2.40
설치비용(원)		19,458,037,000	18,295,644,000	(감)1,162,393,000

7. 관련서류 :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비치서류와 같음)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 - 427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신청 공고

서울특별시 및 중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구역 안에서 지하매설물(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위하여 2018년도 하반기에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도로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및 중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공사
2. 신청기간 : 공고한 다음날부터 30일간
3. 구비서류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에 의한 별지 2호 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첨부
 -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도로굴착장기사업계획(‘18년~’22년)
4. 접 수 처 : 중구청(도로시설과 도로굴착팀 ☎ 3396-6123~4)
5. 신청요령
 - 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나. 도로굴착 사업계획의 조정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도로소재지 관할구청장(중구)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라. 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2019년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 도로굴착사업계획을조정하게 됩니다.
6. 기타 본 공고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로시설과 도로굴착팀 (☎ 3396-61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 <http://hidgp.seoul.go.kr>, 유관기관: <http://hidig.seoul.go.kr>)

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

1. 신 청 자

성 명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2. 신청내역

번호	노선명	공사명	굴착구간	시행부서	매설관경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비 고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대책
4. 안전사고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